

도시계획 용도지역, 지구, 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결정에 대한 의견 정취(안)

의안 [43]
번호

제출일자 : 1999. 8. 17.

제출자 : 달성군



□ 제 안 사유

우리군 회원을 실회관 529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(시설) "안"에 따른 용도지역, 지구와 도로시설 변경결정을 실시코자하는 간으로 도시계획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기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군수가 입안하여 같은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기 자방의회의견을 놓도록 하는 규정임

□ 주 요 골 사

(용도지역, 지구 변경결정 및 결정(일민주기 ⇒ 준주기, 망화지구 신설))

-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기 시장에 대한 결정 기준은 용도지역상 준주기, 중심상업, 일반상업, 균린상업, 일반공업 및 춘공업지역에 한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시설에 적합한 용도지역(일민주기 ⇒ 준주기)으로 변경결정 개회하였으며($A = 40,000m^2$)
- 시장시설 결정에 따른 화재 및 기타 세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화지구 신설을 개회하였습니다.

(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)

- 달성망곡(2)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변경(3차) 및 개발계획변경(3차)승인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-69('99. 6. 18)호로 망곡(2)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간선도로를 신형변경 및 노선 총소($L = 5,230 \Rightarrow L = 5,223m$)개회 하였습니다..

- 불 임 : 1. 도시계획 용도지역, 지구, 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결정 조서 1부.
 2. 위치도 1부. 끝.

도시계획 용도지역, 지구, 시설(도로) 민경 결정 및 결정 “안”

□ 공림공고 기간 : 1999. 7. 19 ~ 1999. 8. 3(국·공휴일 제외 14일간)

□ 공림공고 개시지 : 1999. 7. 19일자(지명자 : 매일신문, 임 님 일보)

□ 대상조사

가. 용도지역 민경 결정

위 치	용 도 지 역 기 정	민 경	면적(m ²)	비 고
월성군 회원읍 실 화리 529민지 일 원	기정	면경	40,000	시정시설 결정 기준에 적합한 용도지 역으로 민경

나. 용도지구 결정

구 분	지 구 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신설	지구명 시 신설 명회지구	화원읍 실화리 529 민지 일원	40,000	시정시설 결정에 따른 화제 및 기타 재해위험을 예방.

다. 도로시설 결정(민경)

구 분	기 등급	류 별	민 호	도 록 원	기 능	인 정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태	주 요 경 과 지	비 고
기정	내로	2	61	30	보조 간선 도로	5,230	달서구월성동 내로1-22	화원읍 실화리 내로1-12	일 민	구미고속도 로 동측	
면경	내로	2	61	30	보조 간 선 도로	5,223	달서구월성동 내로1-22	화원읍 실화리 내로1-12	도로	구미고속도 로 동측	신현민경, 노선축수

위 지 도 (1/ 5000)

